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43,568,644	37,307,059
일반회계	1,016,147,629	30,484,429
특별회계	227,421,015	6,822,630
공기업특별회계	198,424,181	5,952,725
상수도사업	93,816,588	2,814,498
하수도사업	104,607,593	3,138,228
기타특별회계	28,996,834	869,905
교통사업 특별회계	19,972,236	599,16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80,712	41,42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22,809	93,684
대지보상 특별회계	1,712,957	51,389
기반시설 특별회계	229,360	6,881
수질개선 특별회계	2,578,760	77,36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06,57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